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8. 9. 20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8월 31일

나. 발 의 자 : 이용주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9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9. 14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용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(안 제3조)
-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
- 지원대상 규정(안 제5조)
- 재활용품 수집인에 지원 사항 규정(안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제)

-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.
- 주요 제정 내용은
  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3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4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  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6조~제7조까지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2017. 12월 현재 우리구에서 현재 약 112명이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용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8 월 일

발의자 : 이용주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(안 제3조)
- 다.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- 라. 지원대상 규정(안 제5조)
- 마. 재활용품 수집인에 지원 사항 규정(안 제6조)

#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 반영

다. 입법예고(2018. 8. 24. ~ 8. 30.)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활용품”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.
2. “재활용품 수집인”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 등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,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4조(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)**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대상 등)**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65세 이상인 사람
 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
  3.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,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지원)**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야광조끼,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
2.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·방한 의류, 장비 등
3.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